##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76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서삼석·문대림·임호선

이병진 • 박희승 • 복기왕

정준호 · 정을호 · 이개호

김원이 • 윤준병 • 문금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으로 하여금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 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를 지정하고 여객운송사 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해당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조항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 박의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1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국가는 도서주민의 이동권
			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